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인의 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하나, 등본은 신청인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이 필요함

또한,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시설 기준에는 주유소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까지 확대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차량연식(차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에 있음.

최근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현행 시행규칙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 조문내용 조정이 필요함.

또한, 법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항 불일치에 대한 현행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안 제5

조제3항제1호)

나. 「의료법」 및 「항만법」 타 법령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4제5항제4호)

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1조제12호)

라. 법 시행령 인용조문 현행화 등(안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9, 안 제61조)

마.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을 개정함(별표 6의2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후단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18호가목 및 나목”을 “러목1) 및 2)”으로 한다.

제2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4제5항 중 “제2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영 제9조의2”를 “영 제9조”로 한다.

제39조의3 중 “영 제9조의2제1항”을 “영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제7호 중 “화물운송전산망”을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화물운송전산망”을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중 “영 제9조의3”을 “영 제9조의2”로 한다.

제41조의9 중 “영 제9조의4제1항”을 “영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2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2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 제5조제1항 전단 및 별표 1 제2호머목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별표 5의 표 항목 중 그 밖의 운송시설의 허가기준을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으로 하고,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물정보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정보망을 통하여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 지급 등의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별표 6 제10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별표 4 제2호차목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별표 6의2 제7호 중 “주유소 및 정비소를”을 “정비소, 주유소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제43조의3 관련)

시 설 기 준
1. 자동차의 하중(40톤)·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회차하거나 피견인자동차를 분리·연결하는 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7.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정비소, 주유소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구비할 것 8. 제7호에 따른 시설 외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면적은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면적(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계산하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
화물자동차 []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
[]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

1.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주사무소 주소
4. 영업소 주소
5. 상 호
6. 업 종
7. 허가 연월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7조
제41조의6

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u>등본</u>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登記 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3. (생략) ④ (생략)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1. ----- <u>초본</u>- ----- -----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

— —

— —

— —

— —

----- 바목

— —

— —

— —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① (생략)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러목1) 및
2)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2. ~ 11. (현행과 같음)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
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
른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 26.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4.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조제1항](#)

-- -----

-- -----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7.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1조의3(허가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2.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운송
전산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
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4. (생 략)

③ ~ ④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

-----.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화물정보망-----

-----.

제41조의3(허가절차) ①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 -----, 화물정보망-----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3](#)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처분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5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란 제21조제14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 비고 제5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란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1조제14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

----- [영 제9](#)

[조의2](#)-----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

-----.

[<삭 제>](#)